

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(안) 검 토 보 고

I . 예비비 지출 현황

- 지출결정액 : 1억 5,174만 6천원
- 지출액 : 1억 4,548만원
- 이월액 : 0원
-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 : 626만원 6천원(불용률 4.1%)

< 2024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 >

(단위:천원)

세부사업	통계목	지출결정액 가	지출원인 행위액 나	지출액 다	이월액 라	집행잔액 마=가-다-라
계		151,746	145,480	145,480	0	6,266
지방선거 관리 (시의원 보궐선거)	기타부담금	130,766	130,766	130,766	0	0
지방선거 관리 (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)	사무관리비	20,980	14,714	14,714	0	6,266

Ⅱ. 검토의견

가. 시의원 보궐선거 보전경비 납부 예비비 지출

○ 행정국은 2024년 4월 10일 시의원 보궐선거 후 확정된 보전경비를 납부하기 위한 소요 비용을 예비비(1억 3천 1백만원)로 지출 결정하였음.

〈 예비비 지출 내역 〉

(단위: 원)

과 목				지출결정액	지출액	지출잔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 사 유
조직	단위	세부	통계목				지출 결정일	지출일	
행정국 자치 행정과	시민참여 강화	지방선거 관리	기타부담금	130,766,000	130,766,790	210	2024-06-04	2024-06-04	2024년 보궐선거 보전 경비 납부

○ 보궐선거 실시개요

- 선 거 일 : '24. 4. 10.(수)
- 선거지역 : 1개 지역

선출대상	선출인원	대 상 지 역	사유확정일	비용부담	비 고
시의원	1명	노원구2	'23.11.17	전액 시비	보궐선거

○ 보궐선거 보전경비 발생사유

-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가 3인 발생
(더불어민주당 1명, 국민의힘 1명, 진보당 1명)

○ 보전경비 납부 근거법령 ☞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(선거비용의 보전 등)

【공직선거법】

제122조의2(선거비용의 보전 등)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, **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**한다.

1. 대통령선거, 지역구국회의원선거,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

가.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**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**

- 「공직선거법」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 보궐선거 관련 소요 비용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보아 예비비로 지출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.

〈 예비비 지출 세부 사용내역 〉

(단위:천원)

구 분	내 용	금 액
기타보전금	15%이상 득표자 보전금	130,766

나.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수행 경비 예비비 지출

- 행정국은 2024년 10월 16일 실시된 교육감 보궐선거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시집행경비 집행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예비비(2천 1백만원)로 지출하고 6백만원을 불용하였음.

〈 예비비 지출 내역 〉

(단위: 원)

과 목				지출결정액	지출액	지출잔액	처리일자		예비비지출 사 유
조직	단위	세부	통계목				지출 결정일	지출일	
행정국 자치 행정과	시민참여 강화	지방선거 관리	사무관리비	20,980,000	14,714,400	6,265,600	2024-10-10	2024-10-10	서울특별시교육감 보 궐선거 선거관리 사무 수행

○ 교육감 보궐선거 실시개요

- 선 거 일 : '24. 10. 16.(수)
- 선거지역 : 1개 지역

선출대상	선출인원	대 상 지 역	사유확정일	비용부담	비 고
교육감	1명	서울특별시	'24.8.29.	교육청	보궐선거

○ 사용배경

- 교육감 보궐선거로 市 자체집행경비 전액은 교육청에서 편성 및 교부하나,
 - 교육청 교부경비는 금년 추경종료로 **예산편성 불가**하여 전액 세외수입처리 후 **동일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**
- ※ 예산담당관, 재무과, 세무과 지문 결과 세외수입처리 후 동일금액 예비비 편성 결정

○ 사용근거 및 사유

- 근 거 : 지방자치법 제144조(예비비),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 - 사 유 : '24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당시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
- ※ '24.10.16. 보궐선거 실시 확정 및 市집행경비의 규모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

【지방자치법】 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【지방재정법】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-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는 교육청에서 편성 및 교부하는 것으로, 추경 종료로 예산편성 불가하여 전액 세외수입처리 후 동일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세외수입 환급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바,
- 전반적인 지출 및 집행잔액 처리 절차가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 집행 원칙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○ 아울러 6백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은 당초 산출기초의 부실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〈 예비비 지출 세부 사용내역 〉

(단위:천원)

구 분	내 용	금 액
선거관리경비 납부 계		14,714
일반수용비	인쇄비(법정서식 20종 제작)	13,196
	사무용품 구입(상황실)	738
	상황실 현수막 및 배너 제작	195
특근매식비	상황실 근무 직원 특근매식비	585
임차료	선거 사무용품, 복사기, 팩스	-

전 문 위 원	정 찬 일	입법조사관	이 태 기
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〔참고자료〕

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

(단위:천원)

조 직	구 분	예 산 과 목					예산액 ①	지출액 ②	예산잔액 ①-②	금후 소요액	예 비 비 요구액	비 고
		정 책	단 위	세 부	편성목	통계목						
계												
기획 조정실	일반예 산 (예비 비)	예비비 (기획 조정실 예산담 당관)	예비비	예비비	일반예 비비 (801- 01)	90,952,767	130,766	90,822,001			-	
자치 행정과	시민참 여를 통한 시민고 객 감동행 정 구현	시민참 여 강화 (행정 국 자치행 정과)	지방선 거 관리	부담금	기타부 담금 (308- 12)	-	-	130,766			130,766	
	〈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〉 ○ '24.4.10 재·보궐선거 실시 후에 확정되는 보전비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에 해당되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2024 년 5월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귀하											

